

영등포구의회
제15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0. 12. 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5호로 2010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관련 수수료 종류 및 요액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부족한 사항을 정리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 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별표의 일부 수수료 종류 및 요액조정 및 어업 수산업 관련 수수료 신설(안 제3조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제14조,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역경제과, 부과과, 지적과 협의됨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 중 전자적 민원처리에 대한 수수료 징수 시 현금 외 다양한 수수료 지급 수단을 통한 수수료 징수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국적 단위의 수수료 통일 징수기준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

- 수수료 징수방법으로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인증 또는 첨부 하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안 제3조의2제1항),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 외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3조의2제2항)
-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 종류와 요액의 일부 수정 및 어업 수산업 관련 수수료 신설(안 제3조 별표)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전자정부법」 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사항과 다양한 방법의 수수료 지급방법으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관 계 법 령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7.10.4>

[별표] <개정 2010.9.17>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종류	금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	1건당 800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6(조제 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 수수료	1건당 1,000원
「소방기본법」 제 29조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수산업법」 제 17조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수산업법」 제 27(조제 1항 및 제 3항)에 따른 관리선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수산업법」 제 41(조, 제 42(조 및 제 48(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11(조제 1항)에 따른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어선법」 제 13(조제 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의료법」 제 33(조제 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의료법」 제 33(조제 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의료법」 제 33(조제 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의료법」 제 33(조제 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0원
「의료법」 제 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전기공사업법」 제 4(조제 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5,000원
「전력기술관리법」 제 14(조제 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10(조제 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